

## 5.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대통령령 제16,508호 1999. 8. 6.

### 개 정 이 유

생활오수 및 축산폐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법률이 개정(1999. 2. 8, 법률 제5864호)되어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동 지역의 지정 범위를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는 축산폐수배출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여 축산폐수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함으로써 생활오수 및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려는 것임.

### 주 요 골 자

가. 모법에서 환경보전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생활오수의 처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지정·공고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대상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등으로 정하고, 오수처리대책지역에서 식품접객업 등에 이용되는 건물등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함(령 제2조의2 및 제2조의3 신설).

나. 건물을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여 건축연면적이 1천600제곱미터 이상이 되거나 식품접객업·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에 이용되는 건물의 건축연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함(령 제6조의2 신설).

다.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에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관리주체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지정하도록 함.(령 제7조의2 신설).

- 라. 종전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던 분뇨등관련영업, 분뇨처리시설등 설계·시공업 및 오수처리시설등 제조업의 허가 및 등록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함(령 제27조의2·제29조의2 및 제29조의4 신설).
- 마.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제조업자가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에 대하여 받아야 하는 검사를 사전검사와 등록일부터 2년마다 받는 사후검사로 함(령 제29조의5 신설).
- 바.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축산폐수처리시설 등의 관리를 축산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도 처리시설의 소유자가 전원을 끊거나 고장난 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소유자가 그 책임을 지도록 함(령 제32조의2 신설).